

천주청평 2018 - 80호
 시행일자 2018. 10. 24
 경 유
 수 신 전국교구장 및 교회장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 :	결 재	
	번호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 목 ‘효정 청평 2일 평일수련’신설 및 신청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영육계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실제적인 직접주관권속에서 수련회가 크신 은혜 가운데 매 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련을 평일에 진행할 경우, ‘효정 청평 2일 평일수련’(이하, ‘**평일수련**’)으로 인정하여 각 교회의 실적에 반영이 되며, 조상해원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효정 청평 2일 평일수련’ 인정 기준

- 가. 1박 2일 이상의 수련(평일에 천주청평수련원 내에서 진행하는 수련, 친화교육관B관 포함)
- 나. 1박 2일 기준 3만원 이상의 수련비(연령별 2일수련 접수비를 기준으로 함)
 - 효정 청평 2일수련 수련비(성인: 3만원, 초등: 2만원, 영/유아: 5천원)
- 다. 찬양역사 1회 이상 참석(기존 찬양일정에 동참)
- 라. 청평 특강(말씀)

2. ‘효정 청평 2일 평일수련’ 접수 절차

- 가. 수련 예약 시, ‘**평일수련**’으로 인정할 것인지 수련원담당자에게 고지
- 나. 수련 시작 3~4일 전 참석자 명단(첨부된 양식) 1차 제출(해원신청자 별도 표기)
- 다. 수련 당일 명단 확인 및 수련비 납부(당일 납부 및 송금 원칙)
- 라. 해원신청 희망자는 지정된 시간(수련 첫째날)과 장소에서 신청가능(현금 완납)
 *조상축복식은 식구가 직접 성주식에 참여해야 하므로, 평일수련 때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마. 실제 해원은 ‘**평일수련**’ 직 후의 ‘효정 청평 2일수련’때에 성사됩니다.(2일수련 때

부터 100일 수련 시작)

바. 섭리기관/기업체의 경우 각 임직원의 소속 교회로 인정됩니다.

3. '효정 청평 2일 평일수련' 미인정 사례

가. 신청 교회(단체)에서 '평일수련'으로 미인정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

나. 수련비를 3만원 이하로 납부(일부, 또는 전체 할인 적용 불가)

다. 수련 시작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제출한 명단에 없는 식구.

마. 수련 참석이 아닌, 단순 숙박의 경우.

4. '평일수련'에 참석하여 해원식을 신청할 경우, 기본 접수비 3만원(현장 납부 또는 송금 분)은 제외하고, 추가 접수비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청평수련원에 수련중인 기수련생이 해원식을 신청할 경우, 추가 접수비부터 납부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5. '평일수련'인정 시 수련비 기준은 수련 및 숙박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1박 2일 기준 최소 3만원 이상의 수련비로 책정됩니다.

6. '효정 청평 2일 수련'에만 진행하는 효정원 전수식은 '평일수련'당일 수련원의 사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문의(대관을 신청할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관, 친화교육관: 031-589-713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평수련원_cpkr)

나. 친화 교육관 B관: 031-589-7201(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pkr_chb)

다. 홈페이지: <http://www.cptc.kr> “끝”

천 주 청 평 수 련 원 장

